

『인간과 환경이 함께하는 글로벌 KCL』



##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
수 신 자 유아용품업체대표

(경 유) 유아용품 인증업무 담당자

제 목 유아용품 주의·경고 표시 안내 강화 요청

---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제품이 제조·유통되지 않도록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및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, 어린이제품을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, 최근 대한소아과학회가 미국 FDA 등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아용품의 부적절 사용 및 보호자 부주의에 따른 유아 질식사를 방지하고자 유아용품 안전사용에 대한 권고를 요청한 바, 관련 사업자께서는 주의·경고 표시 안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미국 FDA 권고안

2. 미국 소아과학회 권고안. 끝.

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



책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팀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9-01-17  
석제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장목

협조자

시행 안전인증반-18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19. 01. 17.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접수  
우    06711   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(서초동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<http://www.kcl.re.kr/>  
전화 02-2102-262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Fax 02-856-478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[jkseok@kcl.re.kr](mailto:jkseok@kcl.re.kr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/ 공개